



목 포 시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512호 2021. 8. 30.(월)

공 고

○「목포시 수입증지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공고 제2021-1417호

「목포시 수입증지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목포시 수입증지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8. 30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
- ※ 행정안전부 ‘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’에 의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

2. 주요내용

- 수수료 납부 방법 규정(안 제3조)
 - 수수료 등을 현금, 신용카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

-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)
- 「전자정부법」 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

6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(감사실) : 해당없음
- 규제심사 대상여부(기획예산과)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(여성가족과) : 해당없음

7. 예산사항 : 별도 예산조치 불필요

8. 입법예고 기간 : 2021. 8. 30. ~ 2021. 9. 23.(24일간)

9. 사전 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없음

10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23일까지 목포시장(세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처 : 58613,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(용당동) 목포시청 세정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80), 직접방문 등

11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(☎061-270-366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”를 “현금, 신용카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3조제3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수수료의 납부)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<u>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목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 납부는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3조(수수료의 납부) ① ----- ----- ----- <u>현금, 신용카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----- -----.</u></p>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